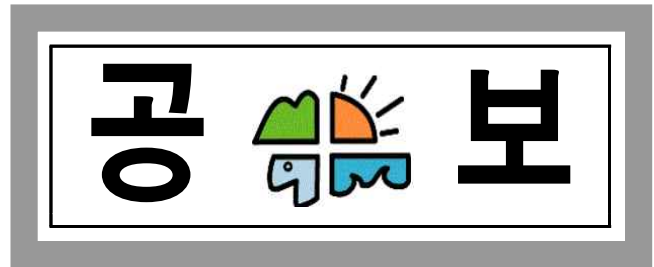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99호 2023년 11월 14일(화)

입법예고

-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 7. 21.)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관련법 조문 변경 사항 반영에 대한 내용(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마.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교육 방법 및 범위 신설
- 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 반영
- 사.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 아.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
- 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차. 기타 조례 문구 수정 권고에 따른 정비(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환경지도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332, FAX 033-639-2386
- 3) 전자문서 : dj875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친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033-639-2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건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수시로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 환기, 소독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20	40	60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10	20	30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 부착 위반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화장실 명칭						소재지							
화장실 종류	☐ 공공, ☐ 민간					관리 책임자	소속						
설치연도							직 급						
설치(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 :)					월평균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부지 (㎡)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수		대변기		비상벨		CCTV 유무	남녀분리 유무
			남자	여자	장애인	성인	유아	양변기	재래식	남자	여자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핸드 드라이어	손 세정제	위생용품 자판기	탈취제 (방향제)	기저귀 교환대		수유 시설	청소 도구함		
								남자	여자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내역	금액 (천 원)	연월일	관리내역	금액 (천 원)	연월일	관리내역	금액 (천 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 :)				설치년도							
	규모		부지면적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양변기	재래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냉난방 시설		에어타올 (페이퍼 타올)		화장지		손세정제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양변기	재래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냉·난방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시설	
		대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속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